

04

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엇을 할 수 있나요?

중소기업협동조합은 국회, 대정부 건의를 통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등 권익을 대변하고 아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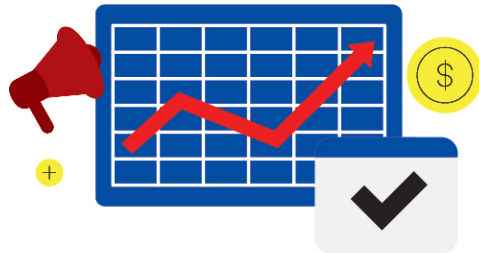
1. 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

공동물류창고, 주차장, 매장, 폐수처리장 등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



2. 공동상표 · 마케팅

제품이나 서비스의 연구, 생산, 판매 전과정에 조합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케팅 수행



3. 공동판매

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출시 · 가공 판매



4. 공동구매

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원 · 부자재를 공동으로 구매



05

관심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어떤 곳이 있나요?

| 지자체 | 구분 | 단지명 | 산업시설면적 | 입주/가동업체 | 비고 |
|-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부산시 | 국가 | 명지녹산 | 4,317 | 1,504/1,427 | 녹산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|
| 인천시 | 일반 |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 | 38 | 23/13 |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|
| 대구시 | 일반 | 성서 | 7,365 | 2,843/2,815 | 대구성서T부품사업협동조합 대구성서공단신라도금사업협동조합 대구성서공단영남도금사업협동조합 대구성서공단현대도금사업협동조합 |
| 파주시 | 국가 | 파주출판 | 586 | 590/314 |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|
| 양주시 | 일반 | 검준 | 88 | 56/52 | 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|
| 포천시 | 일반 | 양문 | 106 | 51/51 | 포천양문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|
| 동두천시 | 일반 | 동두천 | 151 | 47/47 | 동두천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동두천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|
| 여주시 | 일반 | 여수오천 | 130 | 40/34 |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|

※ 2022.2분기 산업단지공단 발표자료 기준

(단위 : 천m², 개사)

중소기업협동조합 지자체 지원 우수사례

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

- 이사장 : 김갑온
- 조합원수 : 30개사 (2022년 6월 기준)
- 설립일자 : 1982. 01. 19
- 전화번호 : 061-651-9401

- 주소 : 전라남도 여주시 망양로 477
- 지자체명 : 전남 여주시
- 지원연도 : 2020년부터 매년
- 금액/내용 : 폐수처리비 3억 5000만원

- 공동폐수처리장의 폐기물처리비, 전기요금, 약품구입비 등 매년 3억 5000만원 운영비 지원

- 폐수처리장 운영비의 90%를 충당하여 조합원 부담 대폭 축소

사진 :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 공동폐수처리장



함께하면 힘이 되는
중소기업의 성장파트너

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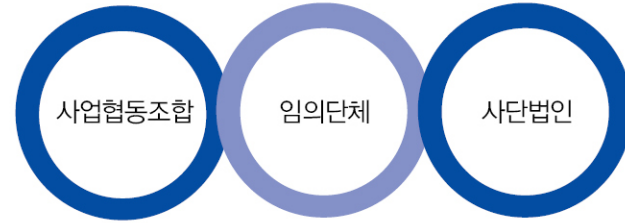
산업단지



01 조합형 기업인협의회가 왜 필요한가요?

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업인협의회 중 사업 확장성이 가장 크며,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추가 지원 기대 가능한 조직

- 기업인협의회



- 사업협동조합은 오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가능
-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(영리)은 개별사업자일 뿐이나,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자단체로서 대표성(비영리) 보유

협동조합 설립 혜택

사업확장

- 기업인협의회(임의단체, 사단법인)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추진 가능
- 조합원을 위한 공동구매, 판매, 연구개발, 상표 등 법정 고유목적사업
- 주무관청 인가를 통한 개방형 수익사업(주차장, 매점, 폐수처리장 운영 등)

기업경영 관련 정부정책 수립에 참여

- 주52시간제, 중대재해처벌법, ESG, 중첩규제 등 공동 대응 대선후보 간담회, 장관 간담회, 지자체장 간담회, 諸 분과위원회 등
- 업체·협의회 건의는 애로·민원 → 조합과 중앙회 건의는 정책건의
- 탄소중립, 폐수, 대기 등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

정부·지자체 지원

- 중소기업협동조합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개정(21년 4월 시행)에 따라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되어, 정부·지자체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가능
-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(중기부),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(지자체)
- 중진공 협동화자금(정책용자),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(제135조)

02 입주기업체 협의회 VS 중소기업협동조합

산업단지 개발 시행자 & 관리 수탁기관

| 구분 | 개발 시행자 | 관리 수탁기관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역할 | 단지개발 시행자 (30% 이상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) | 단지 관리기관 (입주기업 90% 이상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) |

| 일반/도시첨단 산업단지 | 입주기업체협의회 | 중소기업협동조합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인가기관 | 광역지자체장 / 기초지자체장 | 광역지자체장 |
| 설립요건 | 산업단지 면적 15만㎡ 이상 또는 입주기업수 10개 이상인 산단 限 | 5개이상 사업자 / 동일목적사업 |
| 근거법률 | 산업집적법 제31조, 민법(사단법인) |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장 |
| 구성 | 일반회원(입주기업체·지원 기관) 대표자 특별회원(일반회원이 아닌 자로서 관리권자 동의를 받아 협의회장이 임명) | 조합원(입주기업체) 대표자 |
| 총회 운영 | 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| 특별의결 : (좌동)/정관, 제명, 해산 기타의결 : 과반 출석/출석 과반 찬성 |
| 사업 | 산업단지 관리 | 산업단지 관리 + 공동사업 |
| 사업특례 (집적법 제30조⑤) | + 부동산중개업 (산단 공장용지, 건축물에 한함) | (좌 동) |
| 관리기관지정 (집적법 제30조②) | 산단 입주기업체 90% 이상이 회원 | (좌 동) |
| 지원·육성 채널 | 산업단지 지원 사업 | ① 산업단지 지원 사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사업 - 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(정부) - 조합 지원 조례(지자체) - 성과공유형R&D 등(공공기관) ③ 중소기업 지원 사업 - 스마트공장, 부설연구소 등 |

03 중소기업협동조합 어떻게 설립하나요?

사업협동조합 (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0조)

- [조합원 자격]** 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자
- [최저 발기인]** 5인 이상
- [최저 출자금]** 총 4천만원, 하나의 조합원이 전체 출자금 30% 초과 불가
- [조합 업무구역]** 해당 산업단지에 한하되, 산업단지 내 복수조합 설립 가능

조합원 자격 확인

국세청
홈택스

- 홈 → 조회·발급
- 사업자상태
- 사업자등록상태조회

- ✓ 중소기업자, 영리사업자 여부 확인
- ✓ 사업자등록 휴폐업조회 확인

설립절차

- 사전준비**
 - 설립요건, 형태, 명칭 확정
 - 발기인, 출자금 모집
 - 설립요건 및 절차 확인(설립취지서, 정관(안),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작성)
- 창립총회**
 - 일간지 등에 총회개최 공고
 - 설립취지 및 사업계획서, 정관, 임원선임 등 의결
- 인가신청**
 - 중소기업중앙회와 인가신청서 등 설립 관련서류 검토
 - 총회 개최 후 4주 이내 주무관청 인가신청: 인가신청서 등 설립관련 제반서류 제출 (지방자치단체장)
- 후속이행사항**
 - 이사장 업무인계, 법인등기 등 이행
 - 주무관청, 중소기업중앙회(본부·지역본부) 보고 이행
 - 협동조합 포탈 등록 및 이용개시